(주)레이크머티리얼즈

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지침

Kor Ver.1.0 | 시행일: 2026. 10. 15.

제 1 조 (목적)

본 지침은 주식회사 레이크머티리얼즈(이하 “회사”라 함) 및 그 계열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레이크머티리얼즈 임직원 및 계열사에게 적용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① “협력업체”라 함은 회사의 제조·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,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
② “협력업체 풀(Pool)”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
③ “협력업체 선정”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④ “협력업체 운용”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 및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 4 조 (기본원칙)

이 지침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,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계열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,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(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)

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)

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
② 정당한 선정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1.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2.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3.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4.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

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 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
제 7 조 (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)

회사는 협력업체로 선정 및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제 8 조 (등록취소)

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
②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1.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3.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4.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
③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미준수에 대한 제재)

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